

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2년 12월 2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b></p> <p><b>제1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~7. &lt;생략&gt;  <u>8. &lt;신설&gt;</u></p> <p><u>9. &lt;신설&gt;</u></p> <p><u>10. 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2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                      3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b></p> <p><b>제1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~7. &lt;좌동&gt;  <u>8. "사전지정운용제도"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</u>  <u>9. "사전지정운용방법"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u>  <u>10. "현금성 자산"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,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,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&lt;좌동&gt;</p> <p><b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<u>2.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u>                      3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5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6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</p> <p>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내용 반영</p> <p>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제4~7조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>제4~7조 &lt;좌동&gt;</p> <p><u>제7조의2(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영방법 정보 제공)</u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사전지정운영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영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. 자산배분현황, 위험·수익구조,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.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.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.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.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영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</p> <p>⑤ 은행은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우편 발송  2. 서면 교부  3.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, 제21조의3, 시행령 제13조의2, 시행규칙 제8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7조의3(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 제공)</b>            ① 은행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,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  ③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,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.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7조의4(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)</b>            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 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도,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.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신설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7조의5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)</b>            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.            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            2.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~6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</p> <p>2.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</p> <p>3.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,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.</p> <p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2.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7조의6(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)</b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,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</p> <p>2.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</p>	<p>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>3.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4.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5.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7조의7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)</b></p> <p>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,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승인 취소 사유</p> <p>2.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</p> <p>3.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8조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. <u>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릅니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지시합니다.</p> <p>1.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.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</p> <p>④ &lt;생략&gt;</p> <p>⑤ 은행은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, “만기예정일(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)의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운용방법(중도해</p>	<p>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8조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</p> 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. &lt;삭제&gt;</p> <p>③ &lt;삭제&gt;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>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, “만기예정일&lt;삭제&gt;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처리됩니다. 제7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 적립금 운용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. 다</p>	<p>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므로 삭제</p> <p>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폐지에 대한</p>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)으로 운용하시 합니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만,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로 운용됩니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	
<p>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“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”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.</p>	<p>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“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”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.</p>	인용조문 변경
<p>⑦ &lt;생략&gt; ⑧ 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	<p>⑥ &lt;좌동&gt; ⑦ &lt;좌동&gt;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.</p>	사전지정운용 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
<p>제9~35조 &lt;생략&gt;</p>	<p>제9~35조 &lt;좌동&gt;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	
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 &lt;삭제&gt;</p>	시행일 변경
<p>제2조 &lt;생략&gt;</p>	<p>제2조 &lt;좌동&gt;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)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.</p>	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
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)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2월 2일부터 허용</p>	퇴직연금 규약상 상품미지정시 특정상품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[별지1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&lt;생략&gt;</p> <p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1. MMF 2. 정기에·적금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5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7. 이율보증형보험(GIC) 8. 파생결합사채(ELB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9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0.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&lt;신설&gt;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1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[별지2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&lt;생략&gt;</p>	<p><u>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[별지1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&lt;좌동&gt;</p> <p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1. MMF 2. 정기에·적금 3. <u>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8. 이율보증형보험(GIC) 9. 파생결합사채(ELB) 10. <u>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11. <u>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3. <u>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</u>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<u>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</u>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[별지2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&lt;좌동&gt;</p>	<p>운용하도록 명시된 부분 법 시행으로 폐지</p> <p>제8조 제8항에 다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</p>



■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2년 12월 2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p> <p>제1조 &lt;생략&gt;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~8. &lt;생략&gt;</p> <p>9. &lt;신설&gt;</p> <p>10. &lt;신설&gt;</p> <p>11. &lt;신설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p> <p>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</p> <p>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</p> <p>3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</p> <p>4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</p> <p>5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>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p> <p>제1조 &lt;좌동&gt;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~8. &lt;좌동&gt;</p> <p>9. "사전지정운용제도"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</p> <p>10. "사전지정운용방법"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p> <p>11. "현금성 자산"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,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,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p> <p>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</p> <p>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</p> <p>2.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p> <p>3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</p> <p>4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</p> <p>5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</p> <p>6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</p> <p>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내용 반영</p> <p>인용조문 변경</p>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제4~7조 &lt;생략&gt;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>제4~7조 &lt;좌동&gt;</p> <p><u>제7조의2(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영방법 정보 제공)</u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사용자는 은행이 제시한 사전지정운영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영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. 자산배분현황, 위험·수익구조,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.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.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.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.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영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</p> <p>⑤ 은행은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우편 발송  2. 서면 교부  3.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, 제21조의3, 시행령 제13조의2, 시행규칙 제8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7조의3(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 제공)</b>  <u>① 은행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u>  <u>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,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u>  <u>③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,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.</u>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7조의4(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)</b>  <u>① 가입자는 제7조의3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.</u>  <u>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도,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.</u>  <u>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신설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7조의5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)</b>  <u>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.</u>  <u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</u>  <u>2.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</u>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~6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</p> <p>2.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</p> <p>3.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,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가입자가 제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.</p> <p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2.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7조의6(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)</b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,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</p> <p>2.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</p>	<p>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>3.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4.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5.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7조의7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)</b></p> <p>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,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승인 취소 사유</p> <p>2.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</p> <p>3.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8조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. <u>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릅니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지시합니다.</p> <p>1.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.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</p> <p>④ &lt;생략&gt;</p> <p>⑤ 은행은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, “만기예정일(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)의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운용방법(중도해</p>	<p>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8조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</p> 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. &lt;삭제&gt;</p> <p>③ &lt;삭제&gt;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>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, “만기예정일&lt;삭제&gt;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처리됩니다. 제7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 적립금 운용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. 다</p>	<p>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므로 삭제</p> <p>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폐지에 대한</p>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)으로 운용하시 합니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만,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로 운용됩니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	
<p>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“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”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.</p>	<p>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“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”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.</p>	인용조문 변경
<p>⑦ &lt;생략&gt; ⑧ 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	<p>⑥ &lt;좌동&gt; ⑦ &lt;좌동&gt; ⑧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.</p>	사전지정운용 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
<p>제9~35조 &lt;생략&gt;</p>	<p>제9~35조 &lt;좌동&gt;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
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 &lt;삭제&gt;</p>	시행일 변경
<p>제2조 &lt;생략&gt;</p>	<p>제2조 &lt;좌동&gt;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)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.</p>	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
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)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2월 2일부터 허용</p>	퇴직연금 규약상 상품미지정시 특정상품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지1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b></p> <p>제1조~제3조 &lt;생략&gt;</p> <p><b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b></p> <p>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1. MMF 2. 정기에·적금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5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7. 이율보증형보험(GIC) 8. 파생결합사채(ELB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9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0.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<u>&lt;신설&gt;</u>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1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지2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&lt;생략&gt;</b></p>	<p><u>되지 않습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지1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b></p> <p>제1조~제3조 &lt;좌동&gt;</p> <p><b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b></p> <p>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1. MMF 2. 정기에·적금 3. <u>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8. 이율보증형보험(GIC) 9. 파생결합사채(ELB) 10. <u>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11. <u>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3. <u>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</u>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<u>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</u>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지2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&lt;좌동&gt;</b></p>	<p>운용하도록 명시된 부분 법 시행으로 폐지</p> <p>제8조 제8항에 다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</p>



■ 개인형(기업형)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2년 12월 2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인형(기업형)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b></p> <p><b>제1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~7. &lt;생략&gt;  <u>8. &lt;신설&gt;</u></p> <p><u>9. &lt;신설&gt;</u></p> <p><u>10. 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2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                      3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인형(기업형)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b></p> <p><b>제1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~7. &lt;좌동&gt;  <u>8. "사전지정운용제도"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</u>  <u>9. "사전지정운용방법"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u>  <u>10. "'현금성 자산'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,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,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&lt;좌동&gt;</p> <p><b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<u>2.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u>                      3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5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6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</p> <p>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</p> <p>인용조문 변경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제4~7조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>제4~7조 &lt;좌동&gt;</p> <p><u>제7조의2(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 제공)</u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. 자산배분현황, 위험·수익구조,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.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.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.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.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</p> <p>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우편 발송  2. 서면 교부  3.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</p> <p><u>제7조의3(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)</u></p> <p>① 가입자는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 신설, 동법 시행령 13조의2 신설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>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도,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7조의4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)</b></p> <p>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의 다음 영업일</p> <p>2.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</p> <p>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</p> <p>2.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</p> <p>3.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,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.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~6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</p> <p>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2.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7조의5(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)</b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,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</p> <p>2.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</p> <p>3.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4.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5.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	<p>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7조의6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)</u></p> <p>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,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승인 취소 사유</p> <p>2.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</p> <p>3.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</p> <p>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b>제8조 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            ①~③ &lt;생략&gt;           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, "<u>만기예정일(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)의 2영업일 전까지</u>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(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)으로 운용지시 합니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           2.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</p> <p>⑤~⑦ &lt;생략&gt;            ⑧ &lt;신설&gt;</p>	<p><b>제8조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            ①~③ &lt;좌동&gt;           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, "<u>만기예정일&lt;삭제&gt;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</u>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<u>제7조의4가 적용되며,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</u>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. 다만,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&lt;삭제&gt;            2. &lt;삭제&gt;</p> <p>⑤~⑦ &lt;좌동&gt;            ⑧ <u>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.</u></p>	<p>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됨을 명시</p> <p>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</p>
<p><b>제9~31조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           이 계약서는 <u>2022년 7월 22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<u>2022년 4월 14일</u>부터 시행된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</u>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.</p> <p><b>제2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3조 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9~31조 &lt;좌동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           이 계약서는 <u>2022년 12월 2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 &lt;삭제&gt;</p> <p><b>제2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3조(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)</b>            ① <u>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</u>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.           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.     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</p>	<p>시행일 변경</p> <p>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</p>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>[별지1] 개인형(기업형)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&lt;생략&gt;</p> <p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1. MMF 2. 정기예·적금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5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7. 이율보증형보험(GIC) 8. 파생결합사채(ELB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9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0.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&lt;신설&gt;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1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제5조 &lt;생략&gt;</p>	<p><u>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[별지1] 개인형(기업형)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&lt;좌동&gt;</p> <p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1. MMF 2. 정기예·적금 3. <u>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8. 이율보증형보험(GIC) 9. 파생결합사채(ELB) 10. <u>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11. <u>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3. <u>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</u>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제5조 &lt;좌동&gt;</p>	<p>제8조 제8항에 따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</p>

## 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2년 12월 2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b></p> <p><b>제1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~7. &lt;생략&gt;  <u>8. &lt;신설&gt;</u></p> <p><u>9. &lt;신설&gt;</u></p> <p><u>10. 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2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                      3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5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</b></p> <p><b>제1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~7. &lt;좌동&gt;  <u>8. "사전지정운용제도"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</u>  <u>9. "사전지정운용방법"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u>  <u>10. "현금성 자산"이란 가입자가 제8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, 자산관리계약에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,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&lt;좌동&gt;</p> <p><b>제3조(운용관리업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(이 계약에서 "운용관리업무"라 합니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<u>2.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u>                      3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                      4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5.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,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6.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·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개정내용 반영</p> <p>현금성 자산의 정의 명확화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개정</p> <p>인용조문 변경</p>

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제4~7조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&lt;좌동&gt;</p> <p>제4~7조 &lt;좌동&gt;</p> <p><u>제7조의2(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 제공)</u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. 자산배분현황, 위험·수익구조,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.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. 예금자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.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.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</p> <p>③ 은행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우편 발송  2. 서면 교부  3.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</p> <p><u>제7조의3(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)</u></p> <p>① 가입자는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 신설, 동법 시행령 13조의2 신설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>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도,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은행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7조의4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)</b></p> <p>①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 영업일</p> <p>2.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다음 영업일</p> <p>②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</p> <p>2.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7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</p> <p>3.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,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④ 가입자가 제7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.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~6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</p> <p>사전지정운용 제도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>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2. 가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입</p> <p>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7조의5(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)</b></p> <p>① 은행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,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 2.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 3.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 4.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5.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	<p>가입자 적립금의 처리방법 규정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7조의6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)</u></p> <p>①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, 은행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,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승인 취소 사유</p> <p>2.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</p> <p>3.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</p> <p>④ 은행은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</p> <p>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</p> <p>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</p> <p>⑥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	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신설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b>제8조 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</p> 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, "<u>만기예정일(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)의 2영업일 전까지</u>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(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)으로 운용지시 합니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</p> <p>2.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</p> <p>⑤~⑦ &lt;생략&gt;</p> <p>⑧ &lt;신설&gt;</p>	<p><b>제8조(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)</b></p> <p>①~③ &lt;좌동&gt;</p> <p>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, "<u>만기예정일&lt;삭제&gt;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</u>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<u>제7조의4가 적용되며,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</u>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. 다만,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&lt;삭제&gt;</p> <p>⑤~⑦ &lt;좌동&gt;</p> <p>⑧ <u>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.</u></p>	<p>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됨을 명시</p> <p>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포트폴리오단위 매도 규정</p>
<p><b>제9~31조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계약서는 <u>2022년 7월 22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<u>2022년 4월 14일</u>부터 시행된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</u>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.</p> <p><b>제2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3조 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9~31조 &lt;좌동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계약서는 <u>2022년 12월 2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 &lt;삭제&gt;</p> <p><b>제2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3조(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)</b></p> <p>① <u>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</u>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.</p> <p>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</p>	<p>시행일 변경</p> <p>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금지 규정 및 유효기간 명시</p>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지1]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b></p> <p><b>제1조~제3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b>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  1. MMF  2. 정기예·적금  <u>&lt;신설&gt;</u>  3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 5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 7. 이율보증형보험(GIC)  8. 파생결합사채(ELB)  <u>&lt;신설&gt;</u>  <u>&lt;신설&gt;</u>  9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 10.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<u>&lt;신설&gt;</u>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  11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제5조 &lt;생략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지1]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b></p> <p><b>제1조~제3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b>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  1. MMF  2. 정기예·적금  3. <u>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 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 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 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 8. 이율보증형보험(GIC)  9. 파생결합사채(ELB)  10. <u>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 11. <u>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 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 13.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 <u>상품 또는 사전 지정운용방법</u>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  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<b>제5조 &lt;좌동&gt;</b></p>	<p>제8조 제8항에 따른 포트폴리오 매각순서 신설 및 매도 방법 명시</p>